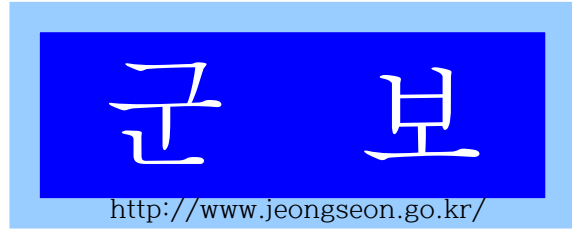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6호 2022. 9. 27. (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06호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0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908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909호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910호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9
- 정선군 조례 제2911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1
- 정선군 조례 제2912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34
- 정선군 조례 제291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4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6호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를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 를 “군정소식지”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 과 “아라리” 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월 1회” 를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수” 를 “횟수”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을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u>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u>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u>소식지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이라 한다.</u></p> <p>제3조(발행) <u>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군정소식지</u>----- ----- -----.</p> <p>제2조(명칭) <u>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u></p> <p>제3조(발행) ① ----- ----- ----- <u>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u> ----- ----- <u>횟수</u>-----.</p> <p>② <u>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u></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군보</u></p> <p>3. ~ 7.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 명예 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②·③ (생 략)</p> <p>제9조(보상) ① (생 략)</p> <p>② <u>소식지의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수 있다.</u></p> <p>제5조(게재내용)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 식 제고에 관한 사항</u></p> <p>제7조(명예기자) ① ----- ----- ----- ----- -----.</p> <p><u>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독자마당 등에 참여할</u> ---- ----- -----.</p>

□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 반영 및 현재의 소식지 발행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띄어쓰기 정비)

나. 군정소식지의 명칭 정비(안 제2조)

- “아라리” 추가

다. 소식지 게재내용에 성평등, 인권감수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8호)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7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으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총괄업무담당”을 “총괄업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을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27조제4항제5호 중 “제5호”를 “제5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감정평가인”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하는”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제8에”를 “제8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u>법 제16조에 따른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u>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나머지 1명은 심의회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u>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u>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u> ----- --- <u>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3. <u>관계공무원</u></p> <p>4. <u>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④<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⑤ (생략)</p> <p>⑥<u>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⑧<u>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이 된다.</u></p> <p>⑨<u>심의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u></p>	<p><삭 제></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긴급</u> <u>하거나</u>----- ----- .</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 <u>총</u> <u>괄업무팀장</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u>제7조제3항</u>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3. (생략)</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u>법 제10조</u>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영 제7조제3항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u>법 제10조의2</u>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u>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u>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략)</p> <p>제18조(<u>사용·수익허가의 제한</u>) ① (생략)</p>	<p><u>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u></p> <p><u>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u>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p> <p><u>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p> <p>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u>무상사용허가대상</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u>사용허가의 제한</u>)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 <u>사</u> <u>용허가</u>-----.</p>
<p>1.·2.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제19조(<u>사용·수익허가</u>)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19조(<u>사용허가</u>) ----- -- <u>사용허가</u>-----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 의무</p>	<p>5. <u>사용허가</u>----- -</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6. <u>사용허가</u>----- -----</p>
<p>7. (생략)</p>	<p>7.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2(<u>수익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경우</u>)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u>를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19조의2(<u>수익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u>) - ----- ----- ----- ----- ----- ----- <u>사</u> <u>용</u> <u>허가</u>----- ----- ----- -----.</p>

현 행	개 정 안
<p>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p>	<p>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부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p>	<p>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 <u>사용허가부</u>----- -----</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 <u>사용허가</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p>	<p>③----- ----- <u>사용허가</u>----- -----</p>

현 행	개 정 안
<p>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 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 -----. ----- -----.</p>
<p>④ ~ ⑥ (생략)</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u>사용수익허가</u>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u> ----- ----- -----.</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이 <u>국가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p>	<p>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p> <p>1. ----- ----- ----- <u>산업단지</u> ----- -----</p>
<p>2. ~ 6. (생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현 행	개 정 안
<p>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 략)</p> <p>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p> <p>6.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p> <p>②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u>감정평가인등</u>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제5호에 따른 수도권권-----</p> <p>6.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감정평가법인</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감정평가법인등</u>-----</p>

현 행	개 정 안
<p>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 ·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그 밖에 가격평 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 ----- -----.</p>
<p>⑤ (생 략)</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 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제13 조의2제3항 및 영 제19조----- ----- ----- ----- ----- -----.</p>
<p>1. ~ 3. (생 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 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9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 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 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p>	<p>⑤ ----- ----- ----- <u>사용허</u> <u>가하는</u> ----- -----.</p>
<p>⑥ 영 제17조제6항제2호, 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 라 <u>사용·수익허가하는</u> 경우 대</p>	<p>⑥ ----- ----- <u>사용</u> <u>허가하는</u> -----</p>

현 행	개 정 안
<p>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⑦·⑧ (생 략)</p> <p>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사용·수익허가</u>,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② (생 략)</p> <p>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u>사용·수익허가</u>,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 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u>정선군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p>	<p>-----.</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p> <p>----- <u>사용허가</u>-----</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p> <p>----- <u>사용허가</u>-----</p> <p>-----.</p> <p>④-----</p> <p>----- 「<u>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p> <p>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u>사용·수익허가</u>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p>	<p>----- <u>사용허가</u>----- ----- ----- ----- ----- ----- ----- ----- ----- ----- ----- ----- ----- ----- -----</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 ----- ----- ----- ----- ----- ----- ----- ----- ----- ----- ----- -----</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u>제8</u>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p> <p>2. ~ 4. (생략)</p>	<p>1. ----- ----- <u>제8</u>조에----- ----- ----- ----- ----- ----- ----- ----- ----- ----- ----- ----- -----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안 제11조제3항)

- (기준금액)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건당 1천㎡ 이상, 처분 1건당 2천㎡ 이상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

- 사용·수익 허가 → 사용허가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8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 을 “제8조제6항”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p>③ ----- ----- ----- -----제8조제6항----- ----- ----- -----.</p>
<p>④ (생략)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④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 ----- ----- ----- ----- ----- 2024년 12월 31일----- ----- -----</p>

현 행	개 정 안
<p>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 ----- ----- ----- -----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p>	<p>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p>
<p>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p>	<p>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 ----- ----- 2024년 12월 31일-----</p>

현 행	개 정 안
<p>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p>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다. 지역특산물생산단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5조)
- 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6조)
- 마.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9호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 제2호” 를 “제2조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 ” 를 “정선군수(이하 “군수” ”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번만”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p> <p>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제2 조제2호----- -----.</p> <p>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 ----- -----.</p>
<p>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교 재학 기간 중 <u>1회에 한하여</u>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제외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 ----- ----- ----- <u>한 번만</u> ----- -----.</p> <p>1. 2.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가. 기존 조례에 ‘교복’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으로 정의하였으나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이 아닌 학교생활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규정 상의 교복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인권침해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 없이 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임.

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재정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교복’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호)

- 당초 :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 변경 :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0호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이란 정선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안 제2조)
-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3조)
-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4조)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1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이 용 료
주 차 장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	(1일당)
		500
		2,000
야 영 장	노 지	연중 15,000
	데 크	비수기 주중 20,000
		비수기 주말, 성수기 30,000

※ 성수기: 7월 ~ 8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안이유

정선군 마을관리 휴양지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양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데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야영장 시설 이용료 상향(별표)

시설명	구 분	이 용 료			
		< 현 행 >		< 개 정 >	
주 차 장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	(당일)	(체류)	(1일당)	
		500	1,000	500	
		2,000	4,000	2,000	
		4,000	8,000	4,000	
야영장	노 지	연중	10,000	연중	15,000
	데 크	비수기 주중	15,000	비수기 주중	20,000
		비수기 주말, 성수기	20,000	비수기 주말, 성수기	30,000

※ 성수기: 7~8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2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굴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 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

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군수는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 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과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p> <p>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p>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p>	<p>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7. 「광업법」 및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7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5조)

다.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제283회 정선군의회(2022. 09. 06.) 및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8. 19.),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9. 23.)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13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에서 정선군 건축에 대하여 위임한” 을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 를 “담당팀장이”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 를 “담당팀장이”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층 이하일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제1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2.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경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주차장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
8. 경량구조의 방법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1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문화행사·체육행사·학술행사·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5회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 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x_2)(y_1-y_2)}{x_1-x_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

제36조제1항제2호 중 “1이상” 을 “1이상.”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제1호 중 “0.5배” 를 “1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선군 건축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규칙</u>,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 ----- -.</p>
<p>제13조(회의록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u>담당주사</u>가 된다.</p>	<p>제13조(회의록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담당팀장이</u> ----.</p>
<p>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생략)</p> <p>② 협의회의 운영자는 건축허가처리부서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관부서의 <u>담당주사</u>가 진행한다.</p>	<p>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담당팀장이</u> -----.</p>
<p>③ ~ ⑤ (생략)</p> <p>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생략)</p> <p>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2.·3. (생략)</p> <p>③ (생략)</p> <p>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준계획시설 또는 준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p>	<p>----- -----.</p> <p>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가설건축물)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3층 이하일 것</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p> <p>② -----</p>

현 행	개 정 안
<p>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p>
<p>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 <u>는 구조물</u></p>	<p>1. <u>농경지 안에 설치하는 농막 (農幕)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 미터 이하인 것(「농지법」에 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u></p>
<p>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 <u>에 쓰이는 구조물</u></p>	<p>2. <u>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처 리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 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 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u></p>
<p>3. 목조, 합석 등으로 구성된 간 <u>이구조물</u></p>	<p>3. <u>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구 조로 된 원예작물판매소 및 농 산물판매소로서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것</u></p>
<p>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u>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u></p>	<p>4. <u>양어장 및 낚시터의 비가림시 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하인 것</u></p>
<p>5.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u>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 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 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u></p>	<p>5. <u>공장부지 안의 철골조립구조 로 된 소규모 기계보호시설로 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u></p>
<p>6.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와 유 <u>사한 구조로 야외흡연실 용도 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50제곱</u></p>	<p>6. <u>노외주차장·체육시설에 경 량구조로 된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8제곱미터</u></p>

현 행	개 정 안
<p><u>미터 이하인 것.</u></p> <p>7.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문화행사·체육행사·학술행사·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u></p> <p>8. <u>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관련 시설</u></p> <p>9. 「<u>관광진흥법</u>」에 따른 <u>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u></p> <p><u><신 설></u></p>	<p><u>이하인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u></p> <p>7. 「<u>주차장법</u>」에 따라 신고를 마친 <u>노외주차장에 합성수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된 차량보호용 건축물</u></p> <p>8. <u>경량구조의 방법초소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것</u></p> <p>9. 「<u>농지법</u>」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u>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u></p> <p>10. 「<u>산지관리법 시행령</u>」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물로서 <u>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u></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11. <u>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근</u> <u>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u>
<u><신 설></u>	12.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u> <u>광·문화행사·체육행사·학</u> <u>술행사·또는 국제행사 등을</u> <u>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u> <u>것</u>
<u><신 설></u>	13. 「 <u>관광진흥법</u> 」에 따른 <u>관광</u> <u>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u> <u>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u> <u>치·이용에 관한 법률</u> 」에 따 <u>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u> <u>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u> <u>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u> <u>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u> <u>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u> <u>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u> <u>막</u> <u>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u> <u>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u> <u>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u>
<u><신 설></u>	③ <u>영 제15조제7항에서 신고해</u> <u>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u> <u>연장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u> <u>는 횟수” 는 5회로 한다. 다만,</u>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u></p> <p><u>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감리비용을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u></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기준 별표 3의 ‘<u>건축물의 종별 구분</u>’에 따른다.</p> <p>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Y = y1 - \frac{(X-x2)(y1-y2)}{x1-x2}$ <p>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p> <p>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31조(도로의 지정) -----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1. (생 략) 2. <u>제방도로</u> 3. (생 략)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u>제방도로 및 공원 안의 도로</u> 3. (현행과 같음)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 ----- ----- -----.</p>
<p>1. (생 략)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u>2분 1이상 <단서 신설></u></p>	<p>1. (현행과 같음) 2. ----- ----- ----- ----- - <u>2분의 1이상. 다만, 아파트는 3분의 2이상으로 한다.</u></p>
<p>②·③ (생 략)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p>
<p>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u>0.5배 이상</u>(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p>	<p>1. ----- ----- ----- <u>1배</u> ----- -----</p>

현 행	개 정 안
<p>를 포함한다)</p> <p><u>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u></p>	<p>-----</p> <p><u>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때에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때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u></p>

□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 나. 직위 정비(안 제13조 ~ 제14조)
- 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 라. 가설건축물의 조건 추가, 용도별 면적 세분화, 준치기간 연장가능 횟수 규정(안 제19조)
- 마.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안 제23조)
-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강화(안 제36조)